

일반 판매 계약조건

1 정의

“공급자”는 엔티티그룹의 현지 법인을 의미한다.

“공급자 보증(Supplier Warranty)”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때때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을 의미한다.

“공급자 견적(Supplier Quote)”은 제품, 제 3 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및 가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의미한다.

“인도(Delivery)”는 공급자의 표준 배송 및 도착으로서, 구매 주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송지 주소(“Ship To” address)인 인수 지역으로의 배송 및 도착을 의미한다.

“맞춤 서비스(Custom Services)”는 일반 서비스 외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관리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공급자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 서비스(General Services)”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스테이징 서비스(staging service), 설치 지원 서비스, 일회성 (비정기적)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서비스(Tiime & Material based Service), 통합건설팅서비스 및 기타 단순작업 지원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문(Order)”은 제품, 서비스 또는 제 3 자 유지 보수의 공급을 위하여 공급자에 요청된 주문을 의미한다.

“제품(Products)”은 공급자가 재판매하는 제 3 자 상표의 제품(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구매자(Purchaser)”란 공급자와의 계약 체결(또는 제품의 구입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자 견적에 응하여 공급자에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급자의 실무자, 관리자, 승계자 및 승인된 양수인을 포함한다.

“서비스(Services)”란 일반 서비스와 맞춤 서비스를 총칭한다.

“제 3 자 유지보수(Third Party Maintenance)”란 제 3 자가 제공하고 공급자가 재판매하는 유지보수를 말한다.

2 계약서의 구성

각각의 주문은 구매자가 본 계약조건(“본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약으로 본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계약”)은 공급자가 주문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체결된다.

본 계약조건은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조건에 우선하며 공급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본 공급자 견적 또는 주문을 확인하는 향후 구매자 측의 어떠한 계약 조건도 적용이 불가하며 이를 무효로 본다.

3 견적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견적가에는 부가세, 소비세(GST), 지방세, 국세, 수입관세, 수출입 수수료, 원천징수세 또는 기타 관련 요금 등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는 공급자가 부담한 이와 같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공급자는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견적 가격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달리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공급자 견적은 그 발행일로부터 30 일 간 유효하다. 단, 구매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원공급자 견적가, 환율, 관세 또는 기타 정부의 수수료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 포장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견적가는 원래의 장비 제조자/원공급자가 배송한 그대로의 상업 포장을 기준으로 한다. 구매자가 요구하거나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 포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한다.

5 검사

구매자가 인도 전에 제품을 검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검사는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인도 전 제품 검사에 단위(unit)당 15 분을 초과하여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경우, 그러한 지원은 해당 검사 시점의 공급자 표준 효율로 제공된다. 검사 결과 구매자가 제품의 수량이나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제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그러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이 인도된 때 구매자가 제품을 수락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인도

공급자견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견적 가격은 공급자 조건(Delivered Duty Paid)을 기준으로 하며,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배송지 주소(“Ship To” address)에서 수령된 때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 양 당사자가 다른 인도 조건을 합의하는 경우, 인도 및 위험의 이전은 그 합의된 인도 조건에 따른다.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배송을 보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제품이 주문서에

일반 판매 계약조건

명시된 인도일 이후에도 공급자의 점유 하에 있도록 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보관 및 취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합의한 인도 제품의 수량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인도 시기에 관한 조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공급자는 분할 인도를 할 수 있으며 각 분할 인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7 보험

공급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는 보험을 유지한다: (i) 법령 상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ii) 계약 책임을 포함하는 일반 책임 보험. 단, 그 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체 상해 (1 인 기준, 발생 건당 총액: 미화 1,000,000 달러); 재산상 피해 (사고 건당 총액: 미화 1,000,000 달러). 공급자는 요청이 있을 시 보험증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인도 시점과 제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관련 피보험 손실을 보장 받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험 회사와 적절한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과 관련된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8 소유권의 유보

인도 또는 본 계약조건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소유권은 공급자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의 총액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일부로 통합되거나 그 부품 또는 구성 성분이 되는 경우, 혹은 제품 또는 그 다른 제품이 구매자에 의해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공급자의 소유권은 존속한다. 구매자의 이러한 판매는 제품에 대한 공급자의 소유권 유보를 전제로 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판매 수익 중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분을 전액 공급자에게 귀속시킨다. 구매자는 제 13 조에 열거된 사건 발생시 또는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급자에게 구매자의 사업장 진입을 허용하는 취소 불능의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공급자가 자유 재량으로 구매자의 사업장에 진입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회수 및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9 설치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부과한 서비스 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구매자의 사업장에 제품을 설치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수행하지 않은 잘못된 설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증 기타 다른 어떤 것을 근거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 또는 예상하지 못한 지장을 주는 사건을 의미하며, 그 결과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의무 이행을 지연하게 되거나,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방해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예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a) 정부의 조치, 무역 제재, 봉쇄, 금수 조치, 검역 또는 기타 여행 제한조치;
- (b) 천재지변, 번개, 소행성, 운석, 지진 및 기타 지진 관련 사건, 홍수, 가뭄, 폭풍, 태양 폭발, 폭풍우, 이류(진흙이 흘러내리는 현상), 토사유실, 폭발, 화재 또는 여하한 자연 재해;
- (c) 전염병 및 (전세계적) 유행성 전염병 또는 중단이나 지연을 유발하는 보다 낮은 수준의 질병 확산(여하한 종류의 매개체 전염병 포함);
- (d) 전쟁 행위, 공공의 적들의 행위, 테러, 폭동, 반란 사태, 내란, 소란 또는 소요, 악의적인 손해, (고의적) 방해행위 및 혁명;
- (e) 인터넷 또는 전기통신 시스템의 고장, 장비 고장, 전력 고장, 사이버 전쟁, 사이버 침입 및 사이버범죄, 사이버 간첩행위, 컴퓨터 또는 사이버상의 (고의적) 방해행위;
- (f) 제 3 당사자 시스템,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및 앱의 고장;
- (g)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취한 여하한 조치 또는 여하한 법률.

어느 당사자도 지불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행 지연이나 그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 대금 지급

구매자는 공급자의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구된 총액을 공제 또는 상계없이 전액 지불해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 발생일로부터 공급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한 날까지 매월 2 퍼센트의 이자율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지급함에 동의한다.

12 취소

어떠한 제품, 제 3 자 유지보수 또는 서비스의 주문도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단, 그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체되지 않아야 함). 공급자가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로 인하여 공급자가 제조사, 판매사 및 배송사에게 지불하게 된 모든 비용, 경비 및 수수료를 실비로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13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a) 상대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b)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수인 또는 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
- (c) 상대방이 채권자와 협의 또는 구성의 합의를 이룬 경우; 또는
- (d) 상대방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14 반품

구매자는 제품에 결함과 관련된 청구를 하는 경우 인도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급자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 및 선적 지시를 얻기 전에는 어떠한 제품도 반품할 수 없다. 화물, 선적 및 기타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보증

15.1 공급자보증은 적용되는 경우 및 본 계약조건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 (a) 모든 조건, 보증, 약속 또는 진술은 그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혹은 달리 공급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본 계약조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제외되거나 제한된다.
- (b) 공급자는 제품의 제조자가 아니다. 공급자는 제품과 관련한 보증에 따른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그와 같은 보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구매자를 지원하되, 그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제3자의 제품의 조건, 품질, 성능, 상품성, 내구성 또는 목적 적합성에 대하여, 그것이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법률에 명시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어떠한 보증, 조건, 약속 또는 협정도 하거나 부담하지 않으며, 그러한 보증, 조건, 약속 및 협정 등은 본 규정에 의해 배제된다.

15.2 구매자는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공급자의 어떠한 진술, 혹은 카탈로그, 목록, 브로셔 또는 홍보물 등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작성하거나 구매자에게 제공된 어떠한 문서에 포함된 설명, 삽화 또는 사양에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인정하며, 동의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적용 가능한 경우라도 그러한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16 책임의 한도

본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단일한 혹은 복수의 청구에 대하여, 공급자의 총 책임의 한도는 구매자가 주문에 의거하여 직전 12 개월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총 수수료 및 요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 기회의 상실, 수익의 상실, 이익 또는 기대이익의 상실, 계약의 상실, 영업권의 상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손실, 공해 또는 오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등에 대하여도 계약상, 법률상(책임의 배제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기타 어떠한 근거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7 설계 및 지적 재산권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본 계약조건을 근거로 이전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제품에 포함된 저작권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그 식별이 어렵게 할 수 없다.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수반하는 라이선스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8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은 구매자와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간에 직접 설정된다.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와 함께 제공된 라이선스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공급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는다.

19 수출 관리

본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하는 몇몇 제품은 그 최종 목적지가 본 공급자 건적이 발행된 지역 내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며, 구매자 또는 제 3 자가 공급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제품, 기술 또는 기술 데이터를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하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은 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수출입 승인을 득할 책임이 있다.

20 계약서의 완결과 이행

계약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다.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이는 그 권리나 구제수단, 또는 그 외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수단의 포기나 해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향후 그러한 권리나 구제수단 또는 그 외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1 분리 가능성

본 계약조건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공급자 건적이 발행된 지역의 법률을 위배할 경우에는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배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22 양도 및 하도급

구매자는 주문 및 그 주문에 따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절대적인 재량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허용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품(또는 그 일부)을 공급하거나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승인된 공급자의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는 주문 또는본 계약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공급자의 관계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23 통지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에서 인편 교부, 선불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될 수 있다

24 준거법

본 계약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문 및 모든 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만 본 계약조건을 개정,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25 개인 정보 보호

공급자와 (해당 있는 경우) 공급자의 하도급 업체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며, 구매자로 하여금 그러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 받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제공 또는 접근 권한 부여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허용되는 것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주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또는 달리 구매자로부터 서면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공급자는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구체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6 뇌물 및 부패의 방지

공급자는 공무원 및 일반 사인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관련 현지법 및 국제법을 항상 준수한다. 이러한 법률에는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및 영국의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조치를 실시 및 이행한다.

27 제 3 자 유지보수

본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재판매한 제 3 자 유지보수는 해당 제 3 자 제공 업체가 인정한 서비스 명세 및 조건에 따른다. 공급자는 그러한 제 3 자 조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제 3 자 유지보수의 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8 서비스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는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공급자 계약조건('추가 공급자 계약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그러한 서비스는 공급자의 포털에서 제공되거나 요청 시 구매자 계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고객 담당자에게 제공된다. 본 계약조건과 추가 공급자 계약조건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추가 공급자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작업 명세서("SOW")도 계약을 보완하고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SOW 는 특정 거래의 세부 사항을 상술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계약조건, 요건 또는

일반 판매 계약조건

반대급부뿐만 아니라 산출물, 수수료, 작업 범위, 테스트, 목표, 프로젝트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본 계약조건(또는 추가 공급자 계약조건)과 SOW 가 상충할 경우 본 계약조건(또는 경우에 따라 추가 공급자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서비스의 개시일은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일자로 한다.